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1998. 8.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폐지이유

- 동조례는 근거법령인 도·소매업진흥법령이 폐지('97. 7. 1) 되고 유통산업발전법령이 제정시행 되면서
- 주요기능인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 시장·백화점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으로써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98. 7. 10)
- 동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었기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임

주요골자

-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

조례(안) : 따로붙임

관계법령발취 : 따로붙임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562호, 1987.10.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유통산업발전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폐지) 다음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
2. 도·소매업진흥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제2조(권한위임 및 위탁사항) ①도지사가 관장하는사무중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98. 7. 10)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경 제 과 1	<p>○ 대규모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설등록</p> <p>나. 영업개시등의 신고</p> <p>다. 개설자의 지위승계등</p> <p>라. 등록의 취소등</p> <p>마. 개설자등에 대한 권고</p> <p>바.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p> <p>사. 시정명령</p> <p>아. 청문</p> <p>자. 보고조사</p> <p>차.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p>	<p>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p> <p>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p> <p>동법 제12조, 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p> <p>동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 규칙제10조제2항</p> <p>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제22조</p> <p>동법 제22조</p> <p>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p> <p>동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40조</p> <p>동법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p> <p>동법제59조, 제64조, 동법 시행령제43조, 동법시행 규칙 제29조</p>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1987. 10. 23 조례 제1562호)

개정 1989. 6. 30. 조례 제1732호

1992. 11. 20. 조례 제2008호

1996. 5. 17. 조례 제2269호

제1조(목적)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별 도·소매업진흥 계획 수립
2.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쇼핑센터),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개정 1992. 11. 20. 1996. 5. 17)
3. 도·소매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4.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1992. 11. 20. 1996. 5. 17)
2.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3.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전문가, 소비자 단체대표 및 관련업계 단체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③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업경제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 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안을 작성하여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정계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30.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20.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7.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